

## 용인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

제정 2005. 6. 30 조례 제 592호  
개정 2005. 10. 5 조례 제 722호  
일부개정 2021. 9. 27 조례 제2174호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용인시의 산업 진흥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의 육성·지원을 위한 용인시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 9. 27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중소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
2. “전략산업”이란 「용인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21. 9. 27]

제3조(설립) 용인시산업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[전문개정 2021. 9. 27]

제4조(사업) 진흥원은 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·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기획, 조사, 연구 및 추진전략 수립
2. 인력양성, 자금·기술개발·판로·지식재산권 지원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
3. 기업과 시민을 위한 시설·장비의 운영 및 교육
4. 창업정보제공, 창업교육,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창업활성화를 위한 지원
5.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특화 전략산업 발굴 및 지원
6. 국외시장 개척 등 수출기업화 지원
7. 기업 지원을 위한 국내외 경제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
8. 기업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투자조합의 결성·운영

- 9.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·위탁 및 용역사업
- 10.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[전문개정 2021. 9. 27]

제5조(정관)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- 1. 목적
- 2. 명칭
- 3. 사무소의 소재지
- 4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- 5. 이사 및 감사의 정수·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
- 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- 7.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
- 8. 직원에 관한 사항
- 9. 공고에 관한 사항
- 10. 사업에 관한 사항
- 11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
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6조(임원)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및 전문직 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. <개정 2021. 9. 27>

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.

③ 원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21. 9. 27>

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제7조(이사회) ①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회의 회무를 총괄하며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원장 및 감사) ① 원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,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9조(직원)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. <개정 2021. 9. 27>

제10조(운영재원) 진흥원의 시설,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국가 및 경기도 지원금
2. 시의 출연금 및 운영지원금
3.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
4.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
5. 위탁사업 수입금
6. 진흥원 사업수익금
7. 그 밖의 수입

[전문개정 2021. 9. 27]

제11조(수익사업) 진흥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1. 9. 27]

제12조(재산출연 등) ①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,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10. 5, 2021. 9. 27>

②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자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.

[제목개정 2021. 9. 27]

제13조(업무의 위탁)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1. 9. 27]

제14조(회계운용) ① 진흥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,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②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 <개정 2021. 9. 27>

제15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진흥원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운영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9. 27>

제16조(검사 등) ① 시장은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및 제반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시비 출연 및 보조와 관련된 업무·회계·자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환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7조(공무원 파견)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「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」에 의하여 입주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05. 10. 5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9. 27 조례 제2174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처분·절차, 그 밖의 행위는 이

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제3조(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은 이 조례에 따른 용인시산업진흥원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이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본다.

제4조(임직원에 관한 조치)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이 용인시산업진흥원으로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 당시의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의 임직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본다.

제5조(권리·의무의 승계) ① 용인시산업진흥원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의 재산과 채권·채무, 그 밖의 권리·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.

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의 명의를 용인시산업진흥원의 명의로 본다.

제6조(사업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용인시산업진흥원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.